


[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방법]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·영업소·사무소·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
2.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·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,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

〈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〉

CCTV 설치 안내	
◆ 설치목적 :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	
◆ 설치장소 : 출입구의 벽면/천장, 엘리베이터/ 각종의 천장	
◆ 촬영범위 : 출입구, 엘리베이터 및 각종 복도(360° 회전)	
◆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	
◆ 관리책임자 : 0000과 홍길동 (02-000-0000)	
(설치·운영을 위탁한 경우)	
◆ 수탁관리자 : 0000업체 박길동 (02-000-0000)	

※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